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고동진 · 김태호
이달희 · 김소희 · 윤상현
배준영 · 박충권 · 강대식
김은혜 · 김위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,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1항).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전단 중 “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
2. 공정별 안전점검계획(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)
3.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(건설공사 중 발파·진동·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)
4.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
5. 안전관리비 집행계획
6.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
7. 공종별 안전관리계획(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)
8.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(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9.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<u>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</u>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·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</u> <u>호의 사항을 포함하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</u> 2. <u>공정별 안전점검계획(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)</u> 3. <u>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(건설공사 중 발파·진동·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</u>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⑱ (생 략)	<u>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 획을 포함한다)</u> <u>4.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 통 소통에 관한 계획</u> <u>5. 안전관리비 집행계획</u> <u>6.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 치계획</u> <u>7. 공종별 안전관리계획(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 차를 포함한다)</u> <u>8.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(공사작업자 및 감리 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)</u> <u>9.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② ~ ⑱ (현행과 같음)
--	---